

사회정의와 노동 : 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종합토론 지상중계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

■ 개념에 대하여

장지연 : 변화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면, 이 새로운 현상들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ILO는 ‘labour’ organization인데, 10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보고서(“Work for a brighter future”)에서는 ‘work’라고 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labour를 주로 ‘노동’이라고 번역하고 work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일’이라고 번역한다. labour, work, action, volunteer labour 등까지, 개념의 의미와 포괄 범위와 관련해서 각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Alain Supiot : 사실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언어에서 이러한 대립이나 보완성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리스어로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는 포노스(ponos)인데 고통이라는 뜻이다. 포노스는 불어의 트라바이(travail), 독일어의 아르바이트(Arbeit), 영어의 레이버(labour)와 같은 의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의 마지막 세션에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논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모든 발언 내용은 학술대회 현장에서 속기로 작성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수정, 강련승, 박시영 연구보조원이 수고해 주었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린다.

미계열에 속한다. 다른 한편으로 에르곤(erg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작업이라는 뜻이다. 에르곤은 불어의 외브르(oeuvre), 독일어의 베르크(Werk), 영어의 워크(work)로 번역된다. 중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한나 아렌트를 잘 인용하지 않는다. 아렌트를 존경하지만 그는 자기의 연구실에서 지성적인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시몬 베유는 직접 공장노동자로 일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도 차이가 있다. 아렌트는 노동과 작업을 구분하면서 작업에 초점을 둔다. 그렇지만 시몬 베유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지는 않았지만, 모든 노동에는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한다. 노동과 작업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다. 로댕이나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에도 분명 땀을 흘리면서 출산의 고통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노동(travail, labour)이란 단어의 원래 뜻은 출산의 고통이다.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을 느끼면서 새로운 존재를 이 세상에 낳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이다. 그래서 노동에는 고통과 창조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노동의 인류학적인 기원을 봤을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저의 친구 한 명은 “신은 교수를 만들었고, 악마는 그 동료들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학자로 일을 한다면 동료들과 토론을 통해 배워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런 긴장관계는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이분법적으로 노동이냐 작업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도 각자가 자기가 하는 노동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실현한다고 쓰고 있다.

郑爱青(Zheng Aiqing): 중국 고대 문헌에서 노동은 신체를 이용한 노동, 즉 육체노동을 가리켰다.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타인의 관리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고등교육을 받는 것은 관리직에 올라가기 위함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노동을 하면서 타인의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관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중국 교육의 열정을 만들었다. 대학입시에 이런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농촌 출신의 학생들도 고등교육을 받아 (정신노동을 하게 되면) 타인을 관리할 수 있다고 여겼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labour라는 단어는 현대에 와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두 가지를 아우르게 되었는데, 실정법 관점에서 보면 노동법에서는 labour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work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을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

면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혼동된다. 전체 사회주의 제도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피고용인도 노동자, CEO도 노동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노동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노동을 새롭게 정의하든지 다른 용어로 변경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嘉戸 一将(Kado Kazumasa): 일본 노동법상 노동은 서구에서 수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것을 차용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 생각한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일본에서 최초로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장법이다. 공장법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지만 공장과 관련된 법률이기도 하다. 즉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공장을 규제한다는 의미와 같다고 본 것이다. 산업주의를 받아들이는 일환으로서 사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의 개념 그 자체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해도 그 정도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다. 노동의 개념을 상대화하는 개념을 생각해봤다. 일본에는 업(業)이란 개념이 있다. 농업의 ‘업’ 같은 것이다. 업이란 개념은, 가업(家業)이란 단어가 존재하듯이, ‘이예(家)’와 관련이 있다. 각각의 이예(家)에는 가업으로 해오는 일이 있다. 굉장히 신분제적인 단어이다. 근대화 이전 일본의 신분제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가산국가(家産國家)라는 말이다. 즉 이예(家)와 산(産)이 결부된 질서라는 개념이다. 이예(家)별로 해야 할 임무가 있고, 이는 신분과 연관되어 있다. 가업이라는 말 자체가 신분과 관련되어 있고, 업이란 말이 농업이나 산업 등의 말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신분제가 해체되고 업 대신 노동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마도 지금 생각해야 할 문제는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일본의 경우 업으로서의 일을 노동으로 대체한다기보다 오히려 노동이 갖는 탄력성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법률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한나 아렌트를 인용하셨는데 아렌트가 행위(action)에 대해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정의한 배경에는 그리스 역사에 노예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생업, 즉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노동에서 해방된 것을 행위라고 한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문제에 행위 개념을 인용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업이라는 단어를 갖고 노동을 재개념화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지 아닐까? 역사를 참조하면서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문제화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라 이해하고 싶다.



학술대회 마지막 세션인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 중인 참석자들

■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

장지연: 다음 키워드인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으로 넘어가겠다. Supiot 선생님은 일일이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노동이란 단어 안에 양면적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안에 사유와 의지 및 목적이 다 담겨야 하고, 이미 담겨 있는 것이라 설명을 해주셨다. 그와 관련한 질문이 조문영 선생님의 토론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현상들, 다양하고 복잡하고, 이동도 다양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의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정체성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으로 인간다운 노동’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드린다.

郑爱青(Zheng Aiqing): 중국이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맞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계속 이동을 하고, 비정규직이라는 노동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다운 노동이라고 한다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중국 고대 현자가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천인합일의 상태가 현 제도에서 실

행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취미나 능력을 부여받게 될 텐데, 노동은 Supiot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알아야 한다. 천인합일에서는 하나의 주체에 주체적인 의식이 있어야 한다. 기계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사람들은 자발적인 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는 산업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발적 의식을 상실하게 되면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부품이 되는 것이다. 옛 사람들은 자연과의 대화를 통해 정체성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사람의 정체성과 자연은 서로 교류하면서 천인합일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기계화되면서 노동도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탈상품화, 탈도구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주체성을 잃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기계화에 익숙해져서 일차적으로 생존을 위해 임금을 높게 주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게 된다. 몇 년 전 인권변호사들이 노동자 계몽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의식을 갖게 도왔고, 존중을 받고자 하는 의식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여러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연대를 통해 조금씩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천인합일을 이루기 어렵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Alain Supiot : 방금 Zheng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은 인간을 준거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인간 노동의 특수성은 생물학적 존재와 정신적 세계가 공존한다는 데 있다. 우리가 현실에 어떤 이미지를 투영할 것인가, 정신적 이미지를 현실에 어떻게 투영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이성의 학교’라 생각한다. 인간의 무한한 정신적 세계를 유한한 생물학적 세계와 결합시키는 것을 통해 우리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계의 노동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환상은 바로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늘 독창적인 존재다. 생물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도 자신의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면서 독창적인 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자신만의 경험을 구축해 나간다. 고유의 경험을 통해 이력과 경력을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에는 신비로움이 있다. 근대성은 이 신비로움을 축출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로 노동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잘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코르넬리우스가 말했듯이 자본주의는 이런 인류학적

자원을 고갈시킨다. 지금의 경제체제는 인간의 활동이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처럼 인류학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이라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술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학적인 도전에도 직면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사회정의와 노동

장지연: 다음 키워드는 사회정의다. 여러 하위 질문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메모를 한 것들을 보면 우선, Kado 선생님께서 사회정의 실현의 조건과 걸림돌 문제를 다뤄주셨다. 평화를 위해서는 ILO 헌장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정의가 있어야 하고, 그 역도 있어야 한다고 하셨으며, 이를 실현하는 걸림돌로 가부장적인 아이디어, 국가, 동질성을 추구하는 성질 등을 이야기해주셨다. 패널들께서 사회정의 실현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란다. 둘째,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국제 규범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다. 신광영 선생님께서는 ILO가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도 못하고 있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다양해진 현실, 국가 간 격차,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북(global north)과 남(global south)의 격차도 얘기하셨다. ILO 역할의 최소주의를 강조하셨다. ILO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도 있고 그 밖에도 오히려 더 큰 의미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ILO와 사회정의를 이야기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연관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란다. 셋째, 김근주 선생님께서 사회정의와 법의 관계, 법이 사회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저는 Supiot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사회정의와 법을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회정의와 법의 관계, 그리고 법은 사회정의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사회정의와 법이란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로 하위질문을 정리했다. 어떤 것이든 먼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한다.

신광영: 사회정의가 무엇인지는 사실 정치철학이나 윤리학의 중요 이슈라 생각이 드는데, 노동과 관련하여 정의하는 것과 일반적 차원, 시민권 차원에서 정의하는 것은 다를 것이다.

노동문제를 중심에 놓고 보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비대칭적 권력관계와 이로 인해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은 갑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을이 되어 갑을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초기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듯이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고용이 되어야 생존이 가능하고, 이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임금에 굉장히 열악한 노동조건임에도 일을 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이 있고, 그래서 두 집단 사이에는 대등한 교환관계, 계약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단히 불공정한 게임의 조건이 형성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와 대립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기업의 경비(노동자)나 대기업의 오너나 똑같은 한 표를 이야기 하고 있다. 정치제도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정치적인 이념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의미에서 1인 1표와 현실에서 경제적인 불균형, 권력관계 이런 것들을 평등과 자유의 가치에 맞게 조정해나가야 한다. 제도, 분배, 노동환경 차원에서 그런 원리,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민주주의도 중요하다. 사회정의를 고정된 형태로, 불변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사회의 발달 수준, 정치 상황, 노조 조직, 법적 차원에서의 인권 등 이런 것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현되는 어떤 하나의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극우주의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사회정의를 그 자체로 특수성을 지니긴 하지만, 그것이 고정된 가치관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는 일정한 과정이나 단계에서 나타나는 속성이 아닐까.

조문영: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중국에서 청년과 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정한 제 인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사회정의를 아주 좁은 의미의 공정담론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을 많이 발견한다. 학생들은 공정(fair)하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대학에 들어와도 똑같은 대학생으로 묶이길 거부하고 선발방식에 따라 여러 층위와 위계를 만들어낸다. 한국 사회에서 약자들 간의 책임 공방과 누가 더 ‘피해자’인가를 따지는 갑론을박이 ‘혐오’로까지 확산되는 반면, 이런 상황을 구조적으로 초래했던 자본은 오히려 선한 얼굴로 등장하고 있다. 며칠 전 SK의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행사를 대대적으로 소개한 뉴스를 봤다. 같은 날 접한 또 다른 뉴스에서는 SK건설이 관여한 라오스 댐 붕괴 사건이 인재(人災)라는 조사단의 발표를 다뤘다. 새로운 세계를 열망하는 학생들이 장래희망을 ‘빌 게이츠

와 같은 기업가'라고 말하는 지금, 돌봄의 문법, 사회정의의 문법까지도 기업이 독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 중국의 상황은 더욱 안타까운데, '정의'에 대한 논의가 대중담론에서 가시적으로 별반 등장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이든 중국이든 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노동자 계급의 공적인 저항을 염두에 두면서 인간의 능동성을 전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노동자들은 그런 능동적 행위자성 자체를 습득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보이스(voice)를 갖는 것조차 지난한 과정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자신의 뜻을 발화할 수 없는 존재들이 사실 도처에 있다. 복지권, 동물권, 사회권, 학습권, 자기결정권 등 한국이 '권리들'의 사회가 되었고 모두다 권리의 담지자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리'라는 언어 외부에 놓인 삶들이 너무나 많다.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에서 보듯 주검이 되어야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다. 박제성 선생님의 한국사례 발표에서 드러나듯, 오히려 헌법에서조차 사회정의 논의가 후퇴하고 있는 측면들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사회정의의 실현 조건

장지연: 조문영 선생님 답변에서도 다뤄지긴 했지만 사회정의 실현 조건에 좀 더 말씀을 듣고 싶다.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동도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역의 제도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이와 관련해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또한 집합적 소유, 관할권, 사회적 인출권 등 제도의 방향에 대해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강성태: 사회자가 하신 질문들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토론에 유익할 것 같다. 첫 번째 질문, 즉 용어 또는 개념의 정의는 지난 몇 년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들과 같이 고민했던 사항이다. 노동과 일에 대해서 보자면, 예를 들어 ILO의 공식 명칭에서는 'labour'를 쓰는 반면, 100주년을 위한 글로벌 위원회의 이름에서는 'work'를 사용했다. 이 둘은 같은가? 다른가? 이런 의문은 국내로 들어오면 가령 편의점의 가맹점주가 노동자와 뭐가 다르지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맹점의 매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가맹본부

알고 노동의 방법과 서비스 방법까지 가맹본부가 지배해서, 자기 자본을 투자했다는 사실 외에는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데 이 사람들을 노동자와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현실적 질문이다. 조금 더 논의를 진척시키면 경제적인 노동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 유익한 노동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나 돌봄 노동을 하는 전업주부에게 연차휴가를 준다면 노동법이나 사회정책의 대상을 임금노동에 한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노동 관련법과 정책의 적용범위를 지금과 같이 가둬 둘 것인가 아니면 확장할 것인가? 확장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이다.

다음으로, 진정으로 인간다운 노동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똑같은가에 관한 질문이다. 시대와 장소 및 업종에 따라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안전, 임금, 목소리 등이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요구사항의 내용과 강도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업 노동자와 골프장 캐디와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말하는 인간다운 노동의 조건은 같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인간다운 노동'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결국 그것의 내용과 보편성에 관한 고민에서 제기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아시아를 보는 이유는, 세 나라에서 노동법 연구자가 처한 상황의 유사성과 협력의 필요성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노동·사회정책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에 많이 의존했다. 저렇게 하면 선진국이 되고 잘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본 모델을 보며 달려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국가는 잘사는 것 같은데 국민들까지 행복한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롤 모델(role model)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을 하였다. 미국도 보고 유럽도 살펴보았다. 그런데 현실에서 진전된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면,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과의 비교였다. 우리보다 잘사는 일본도 아직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와 같은 비판이 쏟아진다. 눈을 미국이나 유럽으로 돌리면서 정작 가까운 일본과 중국의 정책과 제도는 관심 밖으로 밀렸고 그 결과 요즘에는 잘 모르는 나라가 되었다. 연구도 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실제로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을 진전시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동아시아 국가의 연구자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국제노동기준을 아시아적인 기준으로 전환하든 어쨌든 노동과

사회 분야에서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그 나라에서조차 실제의 정책으로 관철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사회정의와 ILO의 역할

장지연: 사회정의와 ILO의 역할에 관한 논의로 다시 돌아오겠다. Supiot 선생님께서는 ILO의 역할 중 제3자 보증인의 역할을 강조하셨다. 토론 중에 중국 사례에 대해 공회에 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문영 선생님의 질문이 있었다. 제3자 보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것이 갖는 의미와 사회정의와의 관계, 그리고 ILO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고 실현 가능한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Alain Supiot: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과 정의를 제가 혼용한 것은 아니다. 정의는 이상이고, 법은 그 이상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법(Droit)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것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로 마무리하겠다.

질문으로 넘어오면, Kado 선생님의 발표에서 큰 인상을 받았다. 정의가 평화의 조건인 것이 아니라, 평화가 정의의 조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어떤 국가질서 내에서 정의가 있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ILO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한 나라에서만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맨 처음부터 사회정의는 국제적인 것이었고 국가 간 연대를 전제로 한다는 생각이었다. 여러 국민국가들이 있었고 이것은 자기 국경 안에서만 존재하고 다른 곳은 모르는 상황이었다. 현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상호 의존적인 상황이 되었다. 신호를 대상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탈영토화도 이루어진다. 소통(communication)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상호의존, 그리고 생태학적인 도전 때문에 상호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재산권과 관련하여 산업화 시대의 기업들은 어떤 물질, 생산수단의 소유를 했다면 이제는 소통의 시스템(communication system)을 소유하고 있다. 소유의 대상이 달라졌다. 각 기업들을 어떻게 통

제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늘 등장하는 질문은 국가 간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양 국가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2차 대전 이후에 필라델피아 선언의 원칙들을 하바나 헌장에 투영시키려고 했다. 하바나 헌장에 보면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의 목표는 현재 WTO의 활동과는 다르다. 가난한 국가들과 부유한 국가들이 서로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 불균형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 헌장을 선진국들이 비준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제3세계 개도국이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를 원한다고 했었고 UN의 1974년 문서가 국가의 권리와 연대에 대한 마지막 문서가 되어 버렸다. 언제나 이러한 문서에 대해서 미국 등 강대국 선진국들이 반대했다. 그때부터 제3세계 국가들은 비교우위라는 게임의 법칙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비교우위는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의 착취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중국이 이렇게 부를 쌓을 수 있었다. 동시에 엄청난 환경파괴가 일어났다. ILO의 책임은 진정한 국가 간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홀로 할 수 없다. WTO, WB, IMF 등 다른 국제기구들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서, 마라케시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의약품은 지적재산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을 치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의약품 보급 원칙을 내세울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폭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연대는 불가능해진다. 다른 국제기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국가 간 연대를 다시 확립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한다. 생태적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 결론을 대신하여

郑爱青(Zheng Aiqing): 조문영 선생님께서 중국 공회의 제3자 역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공회와 관련된 법을 보면, 중국의 공회가 지금도 정부와 노동자 사이에 있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공회법 제27조를 보면 명확히 나와 있는데, 파업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공회가 노동자의 의견을 정부와 기업에 전달하는 것을 통해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누구의 편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중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도 조정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중간에서 일을 더 엉망으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회는 노동자의 유일한 대변인이라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 측이라는 주장도 있다. 노동자 인권 측면에서 중간 역할만 잘해도 공회는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중간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면, 기존보다 더 노동자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ILO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개도국들은 경제발전이 필요하고 경제발전 전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직업의 평등, 아동노동 보호 등의 규정은 잘되어 있는데, 정작 개도국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은 임금이다.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체불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수준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중국은 어떤 성이나 시에서도 자체적인 최저임금의 통일된 기준이 없다. 평균임금의 30%를 넘는 시나 성도 없다.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계속 높인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안전과 보건문제도 중요하다. 지난 ILO 베이징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한 세션에서 2019년 6월 제네바 선언문과 같은 선언을 발표하는데, 핵심공약에 더 많은 내용, 안전과 보건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嘉戸 一将(Kado Kazumasa): 사회정의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보고 싶다. 서구의 보편적 원리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을 때 보편성에서 누락된 것이 특수성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익숙한 것에 대해 특수성이라는 것을 붙여 서구에 내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특수성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데올로기적인 것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일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과 보편성 논의는 꽤나 어려운 문제다. 일체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논의 대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리버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의 특수성'이라고 상대방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존중보다 중요한 것은 논의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기초가 되는 정의가 태어나고 있지 않은가. 관련된 문제로서 사회정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정의란 무

엇인가 하는 문제보다 정의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예컨대 정의는 법질서를 어떻게 정당화하는가와 같은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회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법질서가 더 이상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거기에서부터 사회정의가 비로소 논의된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것이 정의다’라는 식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언가에 입각하지 않으면 법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하루였다.

Alain Supiot : 문화 다양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다. ILO가 창립되었을 때에는 전 세계를 산업화된 세상으로 보는 규범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었다. 문화 다양성을 고려하는 제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저는 규범적 틀을 다시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원칙을 공통으로 정의하고, 이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 아시아적 차원, 지역적 차원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국제적인 원칙을 어떻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사회보장의 접근법과 관련해서 국가별로 연대의 조직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 원칙을 현대에 맞게 적용해 보는 게 필요하다. 저는 지구화(globalisation)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세계화(mondialisation)를 말한다. 항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에도 언어의 다양성을 이야기한다. 저는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불어 단어는 영어로 절대 번역되지 않는 것도 있다. 법(Droit)과 권리(droit)는 불어에서 하나의 단어다. 분리가 안 된다.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 우리는 더욱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다양한 언어(한국어, 불어, 중국어, 일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신 한국노동연구원에 감사드린다. **KLI**